

참고

경기도교육청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

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징계양정(음주운전) 세부기준 (시행 2021.03.01.)

구분		범죄처리 기준	징계양정 기준	
최초음주운전 (혈중알콜농도)		중징계	0.03%이상 ~ 0.05%미만	정 직1월
			0.05%이상 ~ 0.065%미만	정 직2월
			0.065%이상 ~ 0.08%미만	정 직3월
			0.08%이상	강등
음주운전 ❶	2회이상	중징계	0.03%이상 ~ 0.08%미만	해임
			0.08%이상	파면
음주운전등 관련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❷		중징계	정직 - 강등	
음주운전 · 교통사고 (음주운전 중상해사고 포함) ❸		중징계	정직 - 해임	
음주운전등 관련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		중징계	해임 - 파면	
음주운전 · 사망사고		중징계	해임 - 파면	
음주운전 · 물적피해 교통사고 · 도주 ❹		중징계	정직 - 해임	
음주운전 · 인적피해 교통사고 · 도주		중징계	해임 - 파면	
음주측정 불응 ❺		중징계	정직 - 강등	

- ① 음주운전 횟수 산정 적용시점은 "2009. 04. 22. 이후"로 함.
- ② "음주운전등 관련"이란 음주운전, 음주측정불응 및 기타 음주운전과 관련된 행위를 말함.
- ③ "중상해"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,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·중대변형,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·불치의 부상·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·질병을 말함.
- ④ "도주"란 도로교통법 제54조(사고발생시의 조치)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함.
- ⑤ "음주측정 불응"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함.
- 기준 적용: "2021. 3. 1. 이후"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함.

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

[※ 2022.1.4.부터 시행]

구분		구공판		구약식(기소유예)			
		범죄처리 기준	징계양정 기준	범죄처리 기준	징계양정 기준		
최초음주운전 (혈중알코올농도)		경·중징계	0.03%이상 ~0.05%미만	감봉2월	경·중징계	0.03%이상 ~0.05%미만	감봉1월
			0.05%이상 ~0.065%미만	감봉3월		0.05%이상 ~0.065%미만	감봉2월
			0.065%이상 ~0.08%미만	정 직1월		0.065%이상 ~0.08%미만	감봉3월
			0.08%이상 ~0.14%미만	정 직2월		0.08%이상 ~0.14%미만	정 직1월
			0.14%이상 ~0.20%미만	강등		0.14%이상 ~0.20%미만	정 직3월
			0.20%이상	해임		0.20%이상	강등
음주운전 ①	2회	중징계	강등－파면	중징계	0.03%이상 ~0.08%미만	강등	
	3회 이상	중징계	해임－파면	중징계	0.08%이상	해임	
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 에서 운전한 경우		중징계	정 직－강등	중징계	정 직		
음주운전·교통사고 (상해 또는 물적피해)		중징계	정 직－해임	중징계	정 직－강등		
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 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		중징계	강등－파면	중징계	강등－해임		
음주운전· (물적 피해)교통사고 ·도주②		중징계	정 직－해임	중징계	정 직－강등		
음주운전· (인적 피해)교통사고 ·도주②		중징계	해임－파면	중징계	해임－파면		
음주운전·사망사고		중징계	해임－파면	중징계	해임－파면		
음주측정 불응		중징계	정 직－해임	중징계	정 직－강등		
운전업무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	운전면허 취소처분	중징계	해임－파면	중징계	해임－파면		
	운전면허 정지처분	중징계	정 직－해임	중징계	정 직－강등		

- ① 음주 횟수 산정 적용시점은 "2014.11.10 이후"로 함
 - 음주운전이란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, 음주운전으로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
- ② "도주"란 「도로교통법」 제54조(사고발생 시의 조치)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함
- ※ "2022. 1. 4.이후"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며, 그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의 세부기준을 따름